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36 발의연월일: 2020. 11. 6.

발 의 자:이철규·권명호·정운천

윤창현 · 김선교 · 김용판

윤영석 · 최승재 · 윤두현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등이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출원에 기여하지 않은 감면 대상자를 발명자·출원인에 포함시켜 특허료 등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시에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부당하게 감면받은 특허료 등에 대해서는 추징함과 동시에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악용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 면)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 면)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 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 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신 설>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 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 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 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